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818호

나.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찬성자 50명)

다. 제출일자 : 2023년 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일정 하지 않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이외에는 위촉 해제 규정 내용을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함.
- 나.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일괄 정비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 단축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1) 해촉기준 정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위원회 조례’)의 개정(2023.3.27.)으로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됨(제8조의2제1항제6호).
 - 이는 시정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위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그런데 각종위원회 조례 제8조의2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이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이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종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일괄개정함.
- 이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다른 위원회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2) 회의 개최 통보 시기 반영

- 낮은 출석률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부당한 해촉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회의 개최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함 (제10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됨.
-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사용일로부터 7일전(청계·광화문광장), 5일전(서울광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전으로 개정하면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함.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제7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①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소연	02-2180-8065